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0
----------	-----

2019. 9. 2.(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윤남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9년 8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8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8월 22일

-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윤남진 의원)

가. 제안이유

- 대·내외적 뷰티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뷰티산업진흥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뷰티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 뷰티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자문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심의·의결”에서 “심의·자문”으로 개정.
-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개정(안 제11조)
- 위원 해촉 관련 명칭 변경(안 제14조 및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김병준)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뷰티산업진흥 및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충청북도 뷰티산업진흥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
- 뷰티산업진흥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관련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충청북도 뷰티산업진흥위원회는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뷰티박람회 운영지원, 해외 뷰티관광객 유치활동과 지원 등 충북의 뷰티산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해야 함에도 심의기능만 있어 제도적 제약이 있음.
- 충청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해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 대한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청북도 뷰티산업진흥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 뷰티산업진흥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심의하기”를 “심의·자문하기”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의결”을 “심의·자문”으로, 제6호 중 “심의·의결”을 “심의·자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뷰티산업을”을 “소관 업무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위촉·해촉)”을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촉”을 “위촉을 해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제척·기피·회피 등)”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촉될”을 “위촉을 해제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9조(뷰티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뷰티산업진흥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u>심의하기</u> 위하여 충청북도 뷰티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9조(뷰티산업진흥위원회 설치) ----- ----- -- <u>심의·자문하기</u> ----- ----- -----.</p>
<p>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의결</u>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u>심의·의결</u>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뷰티산업 진흥 관련 사항</p>	<p>제10조(기능)----- ----- <u>심의·자문</u>한다. 1. ~ 5. <생략> 6. ----- <u>심의·자문</u>----- -----</p>
<p>제11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u>행정부지사</u>가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u>뷰티산업을</u>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 (생략)</p>	<p>제11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u>----- ----- <u>소관 업무를</u> ----- ----- ----- ----- -----.</p>
<p>제14조(<u>위촉·해촉</u>)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p>	<p>제14조(<u>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u>) ① (현행과 같음) ② ----- -----</p>

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제척·기피·회피 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위촉을 해제-----.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촉을
해제할 -----.